

油価制度의 國際比較와 油価自律化의 方向

Edward N. Krapels

(美国 에너지省 · 石油政策顧問)

오늘 발표할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説明하겠다. 우선 石油価格의 規制와 非規制에 대하여 살펴보고, 일부 基本的인 問題에 돌아가 価格規制의 恵澤은 무엇이며, 그 損失은 무엇인지 알아 보겠다.

두번째로 언급할 내용

은 각기 다른国家의 価格規制問題이다. 11개 先進工業国의 価格規制方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韓국의 油価制度를 검토해 보겠다. 各国의 規制方法은 차이가 있어 흥미롭다.

本人은 価格規制의 보다 一般的인 内容을 말하겠다. 石油価格의 自律化에는 여러 단계가 있으며, 規制해야 할 狀況과 規制하지 않아야 할 狀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強調하고자 한다. 이러한両極端 사이에는 여러 단계가 있으며, 各国의 実情을 살펴보면 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번째로 本人은 이러한 分析을 韓국의 実情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本人은 韓국의 石油産業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本人의 見解에 대하여 여러분의 理解를 바라겠다. 그러나 本人의 見解가 韓국石油価格政策의 方向을 모색하는 데 있어 有益하리라 생각한다.

美国의 価格政策



本人은 워싱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난 수년 동안 레이건 行政府의 自油市場政策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레이건大統領은 石油産業을 포함한 모든 美企業에 대한 대부분의 規制를 철폐했다.

레이건大統領이 취임하기 이전에는 美國의 石油産業은 30년대 이후 계속 規制를 받아 왔다. 美行政政府는 原油価格을 規制하거나 原油供給量을 規制했다. 73년부터 美國은 原油를 輸入해 오고 있다. 美行政政府는 各精油会社의 原油確保量에 대해서도 영향력을行使했다.

이러한 規制의 損益關係를 연구해 본 결과, 規制措置가 일반적으로 產業뿐만 아니라 消費者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레이건大統領이 취임하여 規制措置를 철폐하자 모든 美国人들은 그의 決斷을 환영했다.

理想的인 市場

經濟專門家들에 의하면, 石油의 自油競爭市場이 理想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理想的인 世界에서는 國際石油市場이 自由스럽게 되고 石油消費國의 國內石油市場도 自由競爭市場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經濟学者라면 이러한 制度

□ 第2回 石油セミナー リポート □

의 長点을 증명하기 위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制度下에서 原油価는 生産原価를 반영할 것이며, 따라서 사우디의 軽質原油의 価格은 배럴당 34달러 대신에 배럴당 5달러, 10달러 또는 15달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製品価格 역시 原油費, 精製費 및 各製品価値에 대한 消費者의 評価値를 반영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理想的인 制度下에서는 政府 역시 石油에 대한 規制를 하지 않을 것이다. 政府는 他商品에 税金을 부과하는 것처럼 石油에 대해서도, 税金만 부과하고, 撥発油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制度에서는 또한 世界石油資源의 最適化가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들이 이러한 制度下에서 살게된다면 世界는 현재보다 더 윤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経済学者들이 말하는 理想的인 世界에서 살 수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한 制度가 얼마나 效率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분명히 이와 같은 世界에서 살고 있지는 않다.

不安定한 石油情勢

OPEC各國은 原油에 막대한 税金을 부과해 오고 있다. 原油供給은 대략 7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파동을 겼었다. 1946년의 中東戰爭, 1952년 이란 革命, 수에즈運河를 폐쇄케한 1956년의 中東戰爭, 1967년의 中東戰爭, 1968年の 나이지리아의 内亂, 1973년의 아랍石油禁輸措置, 1979년의 이란回教革命, 1980년의 이란·이라크 戰爭으로 原油供給崩壊가 일어났었다. 이는 経済学者들이 생각하는 理想的인 供給狀況은 아니다.

石油産業 자체를 보더라도 石油産業이 教科書의 理論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Paul Frankel의 유명한 分析에 의하면, 石油公社들은 항상 競争의in企業처럼 행동하지는 않으며, 石油産業은 自由市場의 완전한 競争보다는 카르텔形態의 構造를 志向하고 있다.

供給波動時에는 政府가 石油産業의 競争의企

業처럼 行動하지 말도록 壓力を 가하고 있고, 価格引上보다는 기존 고객들에게 石油를 割当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政府의 개입

石油輸入국의 경우, 政府의 介入은 다양하다. 政府는 撇発油와 기타 製品에 막대한 消費税를 부과하고, 石油製品과 原油에 輸入쿼터를 적용하기도 하고, 石油企業의 許可制度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關稅를 부과하기도 한다.

先進工業国의 경우, 10個國中 9個國에서는 政府가 石油産業으로 하여금 90日分의 非常石油備蓄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備蓄에는 막대한 経費가 소요된다. 非常時 대부분의 政府는 供給分配 또는 割当을 실시하며 自由市場은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10個先進工業国 중 9個국과 100個開發途上國中 99個國에서는 政府가 製品価格을 規制하고, 이를 市場機能에 맡기지 않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基本的인 点을 얘기하는 것은 石油가 世界貿易에서 뿐만 아니라 대다수 国家의 国内去來에서도 一般商品으로 취급되고 있지 않다는 事実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世界各国政府는 石油를 規制하기 위해 税金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規制를 검토해 보기 위해서는 規制의 目的이 무엇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規制目的은 항상同一하지는 않다. 非常備蓄의 目的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 対答은 비교적 명확하다. 즉 그 目的是 石油供給波動時 石油를 非常 供給하는 것이다. 石油製品価格政策의 目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対答은 결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韓國의 規制目的

韓國의 油価制度에 대해서 살펴보자. 政府는 왜 製品価格을 規制하고 있는가? 將來製品価格政策의 目的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分明한 몇개의 目標를 설명하겠다.

消費者 利益의 극대화

製品価格政策의 目的은 韓國의 国民所得을 極大化하고 消費者의 福祉를 極大化하는 것이다. 이것은 基本的인 目標이다. 다음으로 일정한 価格算出方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例를 들어 이를 위해 市場規制의 철폐가 가장 좋다고 생각된다. 韓國의 石油製品価格을 國際現物市場 水準까지 내리게 되면 消費者들의 利益은 極大化될 것이다.

国家安保의 보호

둘째로 石油製品価格改定의 目的이 国家安保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美國에서도 많이 論議되고 있다. 輸入쿼터제가 시행되던 60년대 美國에너지 政策의 目的是 不安한 石油資源에 대한 지나친 依存度를 억제하는 것이었다.

韓國은 어떻게 製品価格決定方式 (Product Pricing Program)에 의해서 国家安保를 보호하고 있는가. 現在의 方式은 国家安保를 目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方式下에서는 製品輸入業者が 韓國에 진출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다. 韓國의 精油產業은 現在의 方式下에서 성장하였으며, 韓國은 현재 精製施設의 自給自足狀態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를 国家安保에 有益한 것으로 評価하고 있다. 美國에서도 이에 대해 同一한 見解를 갖고 있다. 그러나 近年에 와서 精製施設의 自給自足의 必要性에 대하여 점차 論難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世界精製市場은 매우 큰데 비해 製品市場은 매우 弱勢에 있기 때문에 石油製品은 비교적 짧은 기간안에 世界각처로 이동되고 있다. 그러므로 国家安保를 理由로 精製施設의 自給自足에 추가로 投資하는 것은 利潤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精油產業의 보호

石油製品価格政策의 세번째 目標는 精油產業의 保護라고 볼 수 있다. 韓國이 현재와 같은

精油產業을 갖고 있는 한, 同產業의 保護를 바랄 것이다. 精油產業을 보호하는 경우 일정한 費用이 발생한다. 만약 國際競爭으로 부터 精油產業을 보호하게 되면 理論의 精油會社는 效率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精油會社는 國際市場에서 경쟁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韓國에서는 精油產業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石油製品価格을 규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經濟開發計劃에의 부응

네번째 目標는 인플레를 年 10% 이내로 억제하도록 하고 있는 現 5個年經濟社會開發計劃의 目標를 달성할 수 있도록 石油価格制度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 目標를 위해서라면 韩國의 石油市場을 自律化하는 것이 合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韩國의 石油価格은 下落할 것이고, 인플레의 年 10%선 억제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한 네가지 目標중에서 어느 目標를 韩國의 에너지政策수립에서 最優先順位로 할 것인지 本人의 立場으로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다만 이 目標가운데 일부는 서로 배타적이라는 事實은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알수 있을 것이다. 韩國은 네가지 目標를 하나의 政策에 전부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価格規制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本人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韩國에서 規制의 目標가 현재는 무엇이며, 과거에는 무엇이었으며, 앞으로는 또 무엇이겠느냐하는 점이다.

이제 두번째 内容으로 넘어가 설명하겠다. 우선 価格規制의 目的의 무엇인가라는 質問을 明心해 주기 바란다. 本人은 各国의 価格規制의 目標를 설명하겠으며, 이에 대한 說明가운데 여러분들이 規制의 深度를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

規制國家의 유형

이 탁자를 規制의 深度로 생각해 보자. 右側 끝을 自由市場이라고 하고, 左側 끝을 完全規制市場이라고 해보자. 右側 끝 自由市場쪽에는 美國, 英國 및 西獨이 있다. 右側 끝에서 조금 떨

어져서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있으며, 조금 더 멀어져서 日本이 있고 프랑스는 더 左側으로 있으며 韓国은 더욱 더 左側에 치우쳐 있다. 이 탁자의 맨 左側에 台湾과 印度와 같은 나라들이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서 分明한 것은 價格規制의 범위도 각각 다르고, 그 規制도 매우 다양하다는 事実이다. 이들의 規制범위를 몇개의 범주로 묶어보는 것이 좋다. 本人은 이를 네개의 범주, 즉 네개의 規制形態로 나누어 説明하겠다.

政治的 規制国家

첫번째 形態는 政治的 規制国家이다. 이에 포함되는 나라는 이탈리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日本 및 韓国등이다. 政治的 規制国家는 政府가 製品価格의 規制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들이며, 製品価格가 어떻게 变動될지 石油会社들은 잘 모르게 된다. 즉, 製品価格 变動의 時機나 幅은 완전히 政府의 裁量權에 달려있다.

典型的으로, 이러한 形態의 規制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石油価格가 오를 때는 業界에서 바라는 製品価格의 引上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반면, 石油価格가 내릴 때는 신속하게 製品価格를 억제하기 위하여 価格上限線을 설정한다든지 또는 価格를 引下시키는 경향이 있다. 政治的 規制国家에서는 政府가 国内石油市場에 대하여 막대한 영향력의行使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制度를 필수불가결하게開発해 왔다.

連動化 国家

두번째 범주에 드는 나라는 価格決定 公式에 依한 規制国家 (Formula Control Countries) 들이다. 이 범주에는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등이 포함된다. 이들 国家도 石油価格을 規制하고 있다. 그러나 政府는 権限의 일부를 포기하고 石油製品의 価格變動이 換率, 原油費, 人件費等의 变動과 連動되어 自動的으로 결정되는 公式(模型)을 만들어 놓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 制度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政府가 統制權限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事実을 石油会社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石油会社들은 製品価格가 언제 变化될지 잘 알 수 없는 政治的 規制制度보다는 価格變動을 비교적 미리 예측할 수 있고, 自動的으로 価格이 变動되는 이 価格連動制를 바라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価格變動幅을 결정함에 있어서 石油產業의 諸費用을 참작하는 매우 훌륭하고 매우 복잡한 価格規制模型을 개발했다.

프랑스는 諸費用을 고려하는외에 주변국가의 市場価格이나 現物市場価格까지도 고려하는 制度를 창안했다. 이러한 制度를 도입한 理由는 石油会社들에게 똑같은 종류의 마진을 주도록 하고, 또한 石油会社들이 海外市場에서도 利益을 보도록 하자는데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現物市場의 原油, 가스오일 및 撻発油価格과 西独,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大陸市場의 価格을 조사하여 平均価格을 산출하고 이 平均值를 原価와 비교하여 이를 토대로 価格이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目的是 競争要素를 도입하고 完全規制制度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石油会社의 效率性을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다.

原油価 規制国家

세번째 범주에 속하는 나라는 石油製品의 価格이 国内에서 生産되는 原油의 生産価格에 따라 결정되는 国家들이다. 이범주에 속하는 国家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다.

캐나다, 멕시코와 대부분의 OPEC 国家들이 이 범주에 속하고 있으며, 이들 国家에서는 原油価格을 매우 낮은 水準으로 規制하고 있는 것 이 명백하다. 石油製品価格은 原油費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캐나다의 撻発油価格은 美国보다 40~50센트 싸며, 멕시코의 撻発油価格은 美国 価格의 1/2~1/3에 불과하다. 이 制度는 분명히 韓国에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制度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自由市場 国家

네번째 범주에 드는 国家는 매우 制限되어 있다. 즉 이 범주에 속하는 나라는 自由市場国家 3~4個國뿐이다. 本人이 알고 있는 나라로는 美国, 英国, 西独과 스위스뿐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製品価格에 대한 政府의 規制가 전혀 없다.

여기에서 다시 왜 政府가 石油価格을 規制하느냐에 돌아가서 이를 조금전에 説明드린 国家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外国의 規制目的

유럽과 日本의 規制目的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여러가지 理由가 있고, 또한 그 理由는 나라마다 다르다. 스웨덴을 예로 들어 보면, 規制는 国民福祉의 일부이다. 政府는 労動者 및 產業과 일종의 社会契約을 맺고 있으며, 石油製品의 価格決定은 이 社会契約의 한 示現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스웨덴에서 생각하고 있는 先進産業社会가 石油価格問題를 처리하는 方法의 일부이다.

다른 国家에서는 政府가 外国人会社에게 暴利를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더 重要한 要因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精油施設을 美国이나 英国の 多国籍石油会社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非常時 이들 国家에서 暴利를 취해간다는 것이 石油製品価格을 規制하게 된 절실한 理由라고 생각된다.

또 다른 理由는 国家安保을 理由로 精油産業을 보호하려는 政府의 決定이다. 이는 프랑스에서 주로 實施되고 있다. 프랑스는 石油専門家들로부터 “金道금된 새장”(Gilded Cage)이라고 불리어왔으며, 이는 石油会社의 価格決定과 供給活動이 政府의 規制로 제약되어 있지만, 政府는 石油会社들이 항상 利益을 볼 수 있도록 規制를 해 왔다는 事實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自由市場인 西独에서는 81년 石油会社들이 막대한 赤字를 기록했다.

多様한 規制目的

그러므로 Gilded Cage는 国内精油会社들이 계속 稼動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고 多国籍石油会社들이 프랑스에 原油供給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려는 프랑스 政府의 意図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国家安保論의 일부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問題는 프랑스에서 論難이 되고 있으며, 너무 비싼 價格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日本의 경우는 価格規制가 본질적으로 政治的構造의 일부이다. 日本通産省은 行政指導를 신봉하고 있으며, 日本産業政策에서도 전혀 問題가 되지 않고 있는 정도이다.

価格規制의 國際的인 例를 조사해 보면, 政府가 規制하려고 하는 特別하고 著實한 理由를 알 수가 있다. 그 理由는 나라마다 다양하다. 70년대 美国의 価格規制의 主理由는 순전히 石油会社의 暴利를 억제하자는 데 있었다.

즉 이것은 순전히 価格引上으로부터 消費者들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韓国의 石油価格政策을 고려해 볼 때, 어느 外국의 例도 韓国에 결정적으로 좋은 教訓을 지적해 주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韓国에 맞는 単一模型 없어

問題는 어느 国家도 韓国에 알맞는 価格制度를 갖고 있지 않다는 事實이다. 어떤 사람은 國際石油市場을 돌아보고 프랑스制度가 理想의이다. 또는 日本의制度가 理想의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本人은 石油製品価格政策을 本質의in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일단 이처럼 分류되면, 韓国実情에 맞도록 聚合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表-1>에 나와 있는 各国의 規制内容 가운데 어느 부분을 선택하든지 製品価格政策과 製品輸入規制사이의 関係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韓国石油市場의 진정한 自律化는 製品輸入과 製品価格에 대한 規制가 철폐될 때 비로소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나 規制狀態에서 非規制狀態로 移行함에 있어서 현재의 価格이나 輸入規制措置를 점진적으로 완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主要外國의 石油価格制度比較

運動化國家		統制		國		原油統制國家		自由市場國家	
한국	Formula Control價格	日本	行政指導	一部統制價	一部統制價	一部統制價	一部統制價	一部統制價	美國·英國
1. 基本原則	Formula Control價格	"	最高價告示	"	"	"	"	"	自由市場價
2. 規制形態 揮發油 軽油 暖房油 重質燃料油	最高價告示	"	行政指導	最高價告示	最高價告示	監視價格	監視價格	監視價格	自由價格
3. 價格決定方式 및 價管理 变动斗	製品消費費 (原油費, 輸送費, 銷費) 变动斗	左同	行政指導 不當한 便 乘引上인을 防止	公式原油價, 輸送費, 換率 의 變動時 杭制製品價 調整	重質燃料油, 제3油, LPG, 潤滑油中間製 品, 航空油는 監視價格, 調 滑油 完製品, output은 自 由價格	要因: ①原油 費, ②輸送費 ③精製費, ④ 利潤마진 政府부 費用 引起上分을 算定, 杭制製品 과 非杭制製 品間에 配分 由價格	全製品에 대 해 最高價 告示	原油輸入費 補填에 의한 原油平準化 (輸入原油의 平均值와 自 國產原油의 差額을 稅金 에서 补填)	• 카르텔廳에 의한 獨立系 會社 保護措 置存続 ① 獨立系會社 供給分 配 ② 汽油桶을 紐立系會社 보다 10p 높게 維持 하도록 勸 告
• 製品消費費 (原油費, 輸 送費, 銷費) 变动斗	国内生產費와 國際市場의 製品價值間의 比率에 따라 價格決定模型 내製品의 比較에 의해 变动幅	EC의 等一般大眾 需要製品에는 “強力한 行 政指導”를 实施	水準을 考患 하여 決定 • 引上要因을 製品価로 反 映하는 期間 을 45日	價格上限線의 調整原因: ①原油價上昇, ②이태리· EC間의 精 油利益差 ①의 경우 1個月, ②의 경우 ±4% 또는 6個月 마다 調整	• 製品價值는 解除되었으나 地方間 來去 石油에 대한 價格規制는 持続				
• 製品別 最大 引上限度를 設定	一定基準 을 超過할 때 만 最高價에 反映								

価格自律化의 영향

価格을 自律化 할 경우, 韓國經濟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이 質問에 대한 해답은 本人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다. 단지 本人은 유럽市場의 例를 들어 보겠다.

自由市場인 西獨의 경우, 国内石油価格이 現物市場의 価格變化와 아주 밀접하게 变動하는 경향이 있다. 国内価格은 現物市場価格만큼 오르지는 않고, 또 現物 市場価格만큼 내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두 価格 사이에는 相關關係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国内価格과 現物市場価格의 関係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프랑스市場은 需給 및 価格波動時나 供給과 価格下落時나 現物市場価格을 반영할 수 있도록 規制되고 있다.

따라서 西獨市場은 現物市場의 추세에 따라 민감하게 価格이 变動하고 프랑스는 市場이 規制되어 있어 価格이 점진적으로 变化하게 된다.

韓國의 価格制度는 현재처럼 供給過剩일 때 国内価格이 現物市場価格보다 월등히 높도록 되어있다. 반면 79년의 제2차 석유위기 때는 그 反対였다. 즉 韓國의 国内価格은 現物市場価格보다 훨씬 낮았다.

프랑스는 西獨과 韓國의 両極端中間에서 石油価格을 성공적으로 유지해 왔다.

즉, 프랑스는 中道를 걷고 있으며, 国内石油価格은 他国이나 現物市場에 비하여 매우 안정되어 있다.

油価自律化는 점진적으로

結論的으로 말해서 현재 韓國의 制度와 自律化사이에 한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國際的인 例를 검토하고 또 韓國의 精油會社와 国民들의 利益을 분석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In small steps) 価格自律化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本人이 말한 “한 걸음씩”이라는 것은 長期間(Over very long period of time)이라는 뜻이다. 本人은 이러한 어려운 分野에 있어서 다른 여러 나라들의 自律化추진 과정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本人은 精油會社들

이 対処方案을 計劃할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油価自律化 方案

本人은 여기에서 하나의 試案을 제시하겠다. 이 計劃案은 신중한 研究에 근거한 것은 아니며, 단지 論題로 제시하는 것이다. 83년에 第1段階措置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現制度를 換率과 原油価의 变動에 따라 製品価格을 自動的に 조정하는 油価自動運動制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해인 84년에는 이 運動制를 価格決定公式(模型)에 의한 規制(Formula Control)로 바꾸어 일부 油種, 예를 들어 병커-C油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製品輸入規制는 第1段階로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90년 輸入規制 計劃

2년후인 86년에는 병커-C油에 对한 輸入規制를 해제하고, 88년에는 기타제품 즉 軽油와 振発油에도 Formula Control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製品輸入은 계속 規制된다.

90년에 가서, 기타製品에 대한 輸入規制는 철폐되고 韓國은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경험한 바와 같이, 모든 製品에 대하여 Formula Control을 實施하는 것이다. 그리고 製品의 輸入規制도 모두 철폐된다. 95년, Formula Control方式을 폐지하고 완전 自律化가 되는 것이다.

国内石油市場이 한 狀況에서 다른 狀況으로 移行하는 데 이렇게 長時間이 걸린다고 해서 과장된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意見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이보다 훨씬 짧은 期間內에 自律化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

